

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
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8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에서는 정부의 3D프린팅산업 전략발표에 따라 구미시의 제조업 혁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금오테크노밸리 內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자·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대상기관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
- (2) 대 표 : 이성일
- (3) 소 재 지 :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
- (4) 출연예정액 : 금100,000천원(도비 50,000, 시비 50,000)

※ 4차년도(' 19. 7월 ~ ' 20. 6월) 소요예산 중 시비 매칭 금액

나. 주요 사업

(1) 사업명 :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(공모사업)

(2) 사업기간 : 2016년 7월 ~ 2020년 6월 (4년)

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

(금오테크노밸리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)

(4) 총사업비 : 38.54억원 [국비25.54, 도비6.5, 시비6.5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
		'16년	'17년	'18년	'19년
계	38.54	11	12.6	9.6	5.34
국비	25.54	7	8.6	5.6	4.34
도비	6.5	2	2	2	0.5
시비	6.5	2	2	2	0.5

(5) 추진주체 : 산업통상자원부, 경상북도, 구미시

(6) 주관기관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

(7) 사업내용

- 3D프린팅 제조혁신 지원센터 및 장비 구축
- 3D프린팅 소재기반 제조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

(8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3. 8 : 「3D프린팅 부품소재 혁신센터 구축」 기본계획 수립
- 2014. 4 : 「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」 발표(산업부)
- 2014 5~10: 센터구축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
- 2014. 7 : 경상북도·구미시·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체결
- 2015. 4 : 3D프린팅 대경권 거점센터(구미) 공모사업 선정

* (산업부) 6대거점센터: 수도권(시흥), 충청권(대전), 동남권(창원), 대경권(구미), 호남권(익산), 강원권(강릉)

- 2016. 4 :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준공 및 운영 개시
- 2016. 9 : 1차년도 공모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
- 2017. 7 : 2차년도 공모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
- 2018. 10 : 3차년도 공모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예정
- 2019. 7 : 4차년도 공모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예정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3D프린팅(적층형 가공기술)은 전통적인 제조공정 분야에 적용하여 지역 내 전·후방 제조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지역산업 발전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
- (2) 장비·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3D프린팅 기술을 확산시키고 지역산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 마련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(3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(4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□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
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

(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.

이하 "산업기술개발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, 부품·소재 및 장비·설비(플랜트를 포함한다) 기술
2.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
3.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,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
4.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·시스템 기술
5.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·자원기술
6.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2조 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
7. 디자인·브랜드·표준 관련 기술, 유통·전자거래 및 마케팅·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
8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
9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
10. 삭제 <2013.3.23.>
11.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
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
13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

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

2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

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

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

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

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

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
2.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
2. 산업기술 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
3. 연구장비·시설·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(集積化) 촉진
4.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·관리 및 활용의 촉진
5. 산업기술의 표준화, 디자인·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

6.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
7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(제1항은 제외한다)·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관연구기관"은 "주관기관"으로, "산업기술개발사업"은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으로 본다.

□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운영 재원)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.

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·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·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

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기관의 설립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.

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(연구 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

4.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

5. 공고의 방법

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별 표] <개정 2011.12.31>

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(제8조제1항 관련)

기 관 명	
1. 한국과학기술연구원	11. 한국표준과학연구원
2.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	12. 한국식품연구원
3. 한국천문연구원	13. 삭제 <2011.12.31>
4. 한국생명공학연구원	14. 한국지질자원연구원
5.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15. 한국기계연구원
6. 한국한의학연구원	16. 한국항공우주연구원
7. 한국생산기술연구원	17.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8. 한국전자통신연구원	18. 한국전기연구원
9. 한국건설기술연구원	19. 한국화학연구원
10. 한국철도기술연구원	20. 한국원자력연구원

소관 실 · 과		투자통상과
입 안 자	과 장	최 동 문
	담 당	최 연 호
	담 당 자	최 지 영 (480-6144)